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회칙]

(2018.04.11.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동아리는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혹은 '사과대 동아리'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제정이유) 사회과학대학 동아리는 사회과학도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합동, 공유하여 사회과학도 상호간의 발전과 친목 도모의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자치의 지원으로 학생자치가 더 폭넓게 사회과학대학 사회에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리 회칙 제정이유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체계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3조(정의)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는 사회과학대학 동아리를 관리하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구성원(집행위원장, 사무국 구성원, 정책국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과학대학 동아리를 관리하는 집단이다. '가등록 동아리'는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가등록 동아리'등록을 의결한 동아리를 칭하며, '신규동아리'는 이전 학기 '가등록 동아리' 상태에서 '정식동아리'로 새로이 승격(신규등록)되는 동아리를 칭한다. 즉, '가등록 동아리'가 '신규(동아리) 등록'이 될 시 '정식동아리'가 된다. '정식동아리'는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아 '가등록 동아리'에서 승격된 동아리를 칭한다. '재등록동아리'는 '정식동아리'가 된 후의 학기 이후로 매 학기마다 운영위원회의 등록 승인을 받은 동아리를 칭한다.

제2장 등록

제4조(가등록 동아리 등록 및 활동)

1. '가등록 동아리' 등록기간은 각 학기 개강 3주차 시작일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10일간으로 한다.
2. '가등록 동아리'의 활동기간은 등록일 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로 하며,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면 가등록 동아리 등록기간에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가등록 동아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사회과학대학 소속 8인 이상이 서명한 회원명부 1부 (단, 최소 3개 이상의 학과/부에서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동아리 활동 계획서
 - 동아리 등록목적 및 동아리 소개서
4. 모든 서류 제출은 오프라인 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5. 동아리 등록원으로 인정이 되는 자는 휴학생과 복수전공을 제외한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이다.

제5조(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 신규 동아리 등록 대상은 제4조에 의하여 가등록된 동아리들 중 등록한 학기를 제외한 한 학기 이상의 활동을 지속한 동아리들로 한다.

제6조(신규 등록 및 재등록 요건)

1.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동아리 회칙 1부 (단, 동아리 전 회원의 의사로 회칙 불필요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동아리 활동 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사회과학대학 소속 20인 이상이 서명한 회원명부 1부 (단,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학과/부의 회원 수는 전체 회원 수의 7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3개 이상의 학과/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아리 회원은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학과/부를 제외하고 회원이 다음으로 많은 2개의 학과/부에서 각각 전체 회원 수의 15%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등록학기 동아리 활동 계획서
 - 동아리 등록목적 및 동아리 소개서
 - 동아리 활동 내역 보고서
2. '정식동아리'의 활동기간은 등록일 부터 해당 학기 종강일까지로 하며,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면 동아리 등록기간에 제6조 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모든 서류 제출은 오프라인 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식동아리는 회장과 부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동아리의 임원은 최소 두 개 이상의 학과/부에서 한다. 이때, 임원은 회장·부회장·국/부장에 한한다. 이 때,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학과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동아리의 임원진은 최소 2개 이상의 학과/부에서 선출한다.
5. 동아리 등록원으로 인정이 되는 자는 휴학생과 복수전공을 제외한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이다.
6. '가등록동아리'가 '정식동아리'로 승격되었을 시, '정식동아리'가 재등록을 마쳤을 시에는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지원금 사용계획서 심의를 받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제7조('신규 등록 및 재등록' 의결과 완료)

1. '신규 등록 및 재등록'은 각 학기 개강 3주차 시작일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10일간으로 하며, 각 동아리는 등록기간에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에 등록한다.
2. 등록 마감일 후,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등록을 확정한다.
3.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에서 등록이 확정된 동아리는 확정 후 72시간 이내에 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해야 하며 공포와 함께 등록이 완료된다.

제3장 운영

제8조(동아리 활동보고) '가등락 동아리'를 포함한 모든 동아리는 학기 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공고한 기간에 반드시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활동보고는 전 학기 활동내역을 포함한다. (단, 2주 내로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경고 조치가 되며, 그 해 본 동아리 대표자 임기 기간 동안 경고는 누적된다. 경고조치를 받은 이후 1주 내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 시 징계사항에 해당된다.)

제9조(혜택) 사회과학대학 정식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로부터 받는다.

1.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운영하는 공간조정 우선 배정
2.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다양한 홍보기회 제공
3.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기 당 5만원의 지원금 제공

제4장 징계심의위원회

제10조(구성)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은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다. (단, 필요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 논의 후에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소명)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해당 동아리 대표자 1인이 참석하여 징계에 관한 소명을 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사회과학대학 동아리 운영위원회가 징계 사항 직접관련자를 소환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1. 징계심의위원회는 전체 징계심의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참관인에게는 전체 징계심의위원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시적인 발언권을 부여한다. (단, 의장이 일시적인 발언권을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동아리 징계의 사유 및 조치)

1.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
 - 1) 동아리 활동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경고조치 이후 1주 이내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각 학과/부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타 동아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행한 경우
 - 3) 화재문제, 성문제, 폭행문제, 인권침해 등 사회과학대학의 위상에 위해가 되는 경우
 - 4) 2/3이상의 징계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징계사유로 판단 할 경우 2. 세부적인 징계 조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18.04.11.>

제1조(제정) 본 회칙은 사회과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며 제정 후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예산자치제 수혜 방지) 사회과학대학 동아리는 예산자치제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